|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6호<국세 및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심화>의 혁신적 납세서비스 체제에 대한 요구 실현과 편리한 세금처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 등 관련 세금징수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1.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소비세,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하고, 또한 증치세 및 소비세에 따른 부가징수 항목인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 등 세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한다.납세자가 분기별 신고를 이행하지 않기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납부세액의 금액에 근거하여 납세기한을 결정한다.2. 증치세 및 소비세에 따른 부가징수 항목인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는 영(0)신고를 면제한다.3.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기업(1인 기업) 은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를 실행한다.4. 간이 신고방식을 채택하는 정기정액 납세자(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한 납세자)에 대해, 규정기간 내 통합전자납세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세금공제 하거나 혹은 위탁한 은행에서 원청징수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기 신고수속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대리신고를 실행한다.본 공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2016년2월1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合理简并纳税人申报缴税次数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6号为落实《深化国税、地税征管体制改革方案》关于创新纳税服务机制的要求，推进办税便利化改革，根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增值税暂行条例》及其实施细则、《中华人民共和国消费税暂行条例》及其实施细则等有关税收法律法规的规定，现就合理简并纳税人申报缴税次数有关事项公告如下：一、增值税小规模纳税人缴纳增值税、消费税、文化事业建设费，以及随增值税、消费税附征的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等税费，原则上实行按季申报。纳税人要求不实行按季申报的，由主管税务机关根据其应纳税额大小核定纳税期限。二、随增值税、消费税附征的城市维护建设税、教育费附加免于零申报。三、符合条件的小型微利企业，实行按季度申报预缴企业所得税。四、对于采取简易申报方式的定期定额户，在规定期限内通过财税库银电子缴税系统批量扣税或委托银行扣缴核定税款的，当期可不办理申报手续，实行以缴代报。本公告自2016年4月1日起施行。特此公告。国家税务总局2016年2月1日　　 |